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22 발의연월일: 2024. 11. 15.

발 의 자: 조은희 • 이만희 • 권성동

이달희 • 이양수 • 강선영

조배숙 · 김소희 · 박정하

신동욱 • 서일준 • 김 건

송석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 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 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 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29조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반환된 금액. 이경우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며, 회수 또는 감액하여야할 금액이 분기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2분기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회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상보조금 회수 또는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당에 비용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중앙선거	제29조(보조금의 감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	
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	
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	
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u>
	제1항 후단에 따라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
	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반
	환된 금액. 이 경우 경상보조
	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며,
	회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금
	액이 분기별 지급되는 경상보
	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2분기
	이상의 경상보조금을 회수 또
	는 감액할 수 있다.